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8
----------	------

제출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 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함.

- 1) 국가의 사무에서 시 또는 국가·시 공동사무로 전환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 ▶ 물가안정과 관련된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검사, 과태료 부과
- ▶ 건축사무소의 개설신고, 신고사항의 변경·휴업·폐업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시정명령, 건축사업신고부의 정리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2) 사무위임 주체가 자치구로 전환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함.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의 신고·폐업신고 등
-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등
-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와 관련된 시행인가, 공사완료 확인, 사용개시 기간 지정, 시정명령 등

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실시,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다. 그 밖에 위임사무의 근거법령과 주관부서명을 현행화하여 조례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2)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 9. 10.~10. 5.)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 노동민생정책관 표 중 공정경제담당관에 제4호란 다음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5.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p> <p>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p> <p>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p> <p>다.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이의신청</p> <p>라.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p> <p>○「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p> <p>○「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3항</p> <p>○「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p>	<p>구청장</p>
---	--	------------

별표의 □ 경제정책실 표 중 경제정책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도시교통실 표 중 버스정책과 제14호의 사무명란 중 “제24호라 목마목 및 제27호”를 “제26호라목, 마목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표 주차 계획과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를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로 한다.

별표의 □ 주택건축본부 표 중 건축기획과란 중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 및 다 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가목(중전의 나목)의 근거법령란 중 “승강 기법 제21조”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75조”로 하고, 나목(중전의 다 목)의 근거법령란 중 “승강기법 제28조”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82조 제5항”으로 하며, 건축기획과 제1호란 다음에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구청장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 업·폐업의 신고 수리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	

<p>력상실 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p> <p>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p> <p>라. 보고 및 검사</p> <p>마. 과태료 부과·징수(「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p> <p>바. 처분내용의 통지</p>	<p>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p> <p>○「건축사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p> <p>○「건축사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p> <p>○「건축사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p> <p>○「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p>	
--	--	--

별표의 □ 도시계획국 표 토지관리과 제1호란 다음에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2.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무(다만,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p>		<p>구청장</p>
---	--	------------

가. 연수교육 실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나.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다.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별표의 □ 물순환안전국 표 물재생계획과 제1호란 다음에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물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1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노동민생정책관				□ 노동민생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공정경제 담당관	1. ~ 4. (생략) <u><신설></u>			구청장	1. ~ 4. (현행과 같음) 5.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가. 가격표시 의무의 지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1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다.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이의신청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라.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현 행

□ 경제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경제정책과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 나.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다.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의 정지 라. 폐쇄 및 수거 마. 청 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시목까지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6조, 제20조, 제21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목까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0조, 제11조 ○ 음악산업법 제24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음악산업법 제27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 음악산업법 제29조 ○ 음악산업법 제30조	구청장

개 정 안

□ 경제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차계획과	15, 16. (생 략)		구청장		15, 16. (현행과 같음)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 -----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사목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3항		<삭 제>	<삭 제>		
	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	○여객자동차법 제38조제4항		<삭 제>	<삭 제>		
	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여객자동차법 제39조		<삭 제>	<삭 제>		
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여객자동차법 제42조제3항	<삭 제>	<삭 제>				

현 행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 (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여객자동차법 제43조제1항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	
	사. 과태료의 부과 징수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제9호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생략)	(생략)	(생략)

개 정 안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삭제>	<삭제>	
	가. ----- -----	○----- -----	
	나. ----- -----	○----- -----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 ----- ----- ----- (물재생계획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 주택건축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나. 검 사 다. 과태료 부과 징수 (다만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다목까지 ‘승강기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승강기법 제21조 ○승강기법 제28조	구청장
	<신 설>		

개 정 안

□ 주택건축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	1.----- ----- <삭 제> 가. ----- 나.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75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82조 제5항	-----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구청장

현 행				개 정 안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u>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 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u>	<u>○「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5호 및 제6 호)</u>	
					<u>다. 건축사업무신고부 의 정리</u>	<u>○「건축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u>	
					<u>라. 보고 및 검사</u>	<u>○「건축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u>	
					<u>마. 과태료 부과·징수 (「건축사법」 제1 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u>	<u>○「건축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u>	
					<u>바. 처분내용의 통지</u>	<u>○「건축사법」 제22조 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 항제2호)</u>	

현 행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물재생 계획과	<신 설>		

개 정 안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물재생 계획과	2.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 계영향권별 오염 원 조사	○ 「물환경보전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 항제1호)	수입기관 구청장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규정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조직담당관 최현수(2133-6754)